

# 2020학년도 전기 대학원 법학과 학사안내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LAW

##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신입생 여러분,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에 입학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부득이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은 국내에서 가장 오랜 전통과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법률 전문가 양성기관입니다. 고려대학교(高麗大學校)의 역사는 1905년 개교한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보성전문학교는 수업연한 2년제의 법률학전문과(法律學專門科)와 이재학전문과(理財學專門科)를 두고 있었고, 1915년 법률과 3년제로 개편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법학 고등교육의 시작이었습니다. 1946년 고려대학교가 종합대학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보성전문학교를 계승하면서 정법대학에 법률학과와 정치학과를 설치하였고, 1949년에는 대학원이 개원하였습니다. 1955년 정법대학을 폐지하고 법과대학을 신설하여 법학과와 행정학과를 두었고, 1981년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정경대학으로 학과소속을 변경하였습니다. 1996년에는 법무대학원이 개원하였습니다. 2009년 법학 교육제도의 개편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하였고, 2018년 2월 법과대학은 폐지되었습니다. 요컨대, 고려대학교 법학 교육의 역사는 115년 전인 1905년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대학원만 하더라도 71년 전인 1949년까지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1949년 고려대학교 대학원이 개원하면서 대학원생이 최초로 입학했는데, 그중 한 명이 고(故) 한동섭(韓東燮)(1926~1977)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한동섭 교수는 1949년에 입학하여 고(故) 유진오(兪鎭午) 총장의 지도하에 1950년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첫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첫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분은 1963년에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1976년에 졸업한 김운용(金雲龍)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지금까지 총 누적 졸업생은 박사가 500명, 석사가 1,739명입니다. 2019년 8월과 2020년 2월 졸업생만 보면 박사가 22명, 석사가 35명입니다.

졸업생들은 대학의 교수나 연구소의 연구원 외에,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국회·법원 또는 행정부의 공직자, 경찰, 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법무 담당자, 법무법인·법률사무소의 업무 담당자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법률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은 국내 최고의 교수님들과 전문강사진에 의해 각 전공 분야에서 매 학기 다양한 주제의 특화된 강좌를 통하여 최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 받을 것입니다. 주어진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학위논문을 작성하다 보면 여러분은 어느덧 해당 분야의 법률전문가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대학원은 학습과 연구 이외에 그 구성원이 함께 숨 쉬며 생활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가 속한 연구실 또는 전공을 중심으로 맺게 되는 관계를 소중히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형성하고 있는 관계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게 될 것입니다. 신입생 여러분은 모두 그러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려대학교는 단순히 전문지식인을 교육시키는 것만을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전통적으로 ‘공선사후(公先私後)’의 정신에 따라 우리 민족과 국가의 발전에 공헌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사회의 발전은 물론,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개성을 존중하는 ‘사람중심의 문화’를 함께 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할 때야말로 개인의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의 발전도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입생 여러분 모두 이 점을 명심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학에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언제나 행운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안 효 질

## 인사말

먼저 여러분들께서 우리 대학원의 법학과에 입학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전에는 한데 모여서 입학의 축하와 학사 일정 등에 대한 안내를 하였는데, 금번 학기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이렇게 글로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려대학교는 1905년 창학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고려대학교는 자유, 정의, 진리라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해 왔고, 공선사후(公先私後)라는 행동규범에 따라 학교, 그리고 국가·사회의 물음에 답해 오려고 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이러한 대학으로서의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법과대학은 언제나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법학 고등교육을 실시해 온 이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은 백 일이십년 동안 법조계와 학계, 그리고 다양한 사회·직업활동분야에서 조직을 선도하면서 자신의 본분을 다 해 오고 있는 수 많은 인재를 배출해 왔습니다.

바로 이런 고려대학교, 그리고 법과대학의 큰 업적과 높은 사회적 위상 위에서 우리의 대학원 법학과는 법학의 학문적 가치와 내용을 구축한다는 법학적 아카데미즘의 원천으로서의 임무를 맡아오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지금에서 경제적 가치의 중시, 직업적 교육의 강조, 급격한 과학 발전의 여건 하에서도 대학원 법학과의 책무, 즉 법률적 지식을 보다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이론적으로 정리, 발전시키야 한다는 자기 역할은 더욱 더 강조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가 이와 같이 국내 최고의 법학 연구기관으로서 책무를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하는 데에는 여기 계신 입학생 여러분의 남다른 각오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몇몇 부탁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초심을 잃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기 계신 입학생 여러분은 이런 저런, 어찌면 각자 다를 수 있는 목적과 배경에서 우리 대학원에 입학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공통분모는 어떤 개별 사건이나 업무에 적용되는 개별적 법률지식 등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자신이 갖고 있는 법률적 지식을 보다 심도있게 알고자 하는 강한 욕구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대학원 재학 도중 학업으로 지치고 힘이 드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 때 이러한 시작의 이유를 항상, 그리고 꼭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학문적 겸양과 진지함을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적지 않게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이실 것이고, 그래서 많은 바 업무를 함에 있어서 많은 실무적 지식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저는 갈등 내지 긴장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자신이 가지고 계신 실무적 경험 내지 지식과 다른 한편 이러한 개별적 경험과 지식을 체계화하고 이론화하려는 학문적 작업의 긴장관계를 유심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대학원 법학과에 진학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의 목마른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을 그냥 덮어 놔 버리지 마시고 꾸준히 메꾸기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지도교수님, 그리고 적어도 소속 전공분야의 대학원 동료와 학문적 유대관계를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원의 한 학기 시간은 생각 이상으로, 그리고 내가 굳이 무엇을 막 찾아나서지 않더라도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아마 얼마 후 ‘벌써 1학기가 끝났어’ 하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맡겨진 일, 가령 대학원 수업의 세미나에서 자기 본인의 발표에만 스스로를 가두지 마시고, 한 걸음 나가서는 다른 동료의 연구주제, 좀 더 나아가면 지도교수 및 전공의 다른 교수님 등의 연구내용에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 그러면서 대학, 그 중에서도 학문적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대학원이 왜 학문의 공동체라고 불리는지를 꼭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입학을 축하드리고, 문득 예술이 예술인 것은 그 속에 ‘자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았는데, 바로 여러분들도 ‘자기’를 실현하려고 발을 들어놓은 학문의 넓은 세계에서 동료, 교수, 그리고 직원 선생님들과 함께 큰 성과를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주임교수  
김 상 중

# 고려대학교 교가

조지훈 작사  
윤이상 작곡

Moderato (♩ = c. 96)

*mf*



1. 북 악 산 기 습 예 우 독 솟 은 집 을 보 라 안  
2. 자 유 료 위 수 하 여 은 물 결 솟 은 가 승 이 여 정  
3. 그 구 한 수 불 은 우 리 꿈 의 요 람 이 요 저



암 의 인 덕 예 퍼 저 나 는 빛 을 보 라 처 패 의  
의 료 위 하 여 근 근 계 나 는 은 신 소 념 이 여 불 타 는  
넓 수 번 판 은 우 리 힘 의 소 망 이 다 드 는 이



보 람 이 요 정 성 이 몽 쳐 드 높 이 쌓 아 올 린 공 든  
정 심 이 라 그 뜻 들 서 받 아 아 득 히 우 러 르 는 른 이  
나 가 는 이 들 려 서 지 처 힘 차 개 이 어 가 는 이 정



탐 자 유 정 의 진 리 의 전 당 이 있 다  
상 자 유 정 의 진 리 의 한 빛 이 있 다  
신 자 유 정 의 진 리 의 큰 길 이 있 다



고 려 대 학 교 고 려 대 학 교 마 음 의 고 향



고 려 대 학 교 고 려 대 학 교 영 원 히 빛 난 다

# 목 차

I. 조직 및 구성원	1
II. 2020학년도 전기 학사일정	2
III. 학사안내	4
1. 수강신청	4
IV. 교과과정	5
1. 법학과 전공분야	5
2. 과정별 수료학점	5
3. 지도교수 지정과목	7
4. 연구지도학점	7
5. 종합시험	7
6. 외국어시험	7
7. 논문심사	9
V. 법학과 내규	10
VI. 신입생 필수 제출서류 안내	14

# I. 조직 및 구성원

## 1. 대학원 법학과 주요 보직교원

보직	교수명	구내번호	Email
대학원 법학과 주임교수	김상중	2874	sangjoong@korea.ac.kr

## 2. 전공별 주임교수

세부전공	교수명	연구실	Email
국제법	강병근	1908	kangpk@korea.ac.kr
민법	김상중	2874	sangjoong@korea.ac.kr
민사소송법	김경욱	2880	kimkw@korea.ac.kr
법철학	윤재왕	2887	zwoon@korea.ac.kr
사회법	박지순	2875	augsburger@korea.ac.kr
상법	김태진	1875	lawtjk@korea.ac.kr
행정법	하명호	2873	hama@korea.ac.kr
헌법	차진아	1878	jinahca@korea.ac.kr
형법, 형사소송법	홍영기	2888	hongyounggi@korea.ac.kr
지적재산권법	조영선	2881	soaring@korea.ac.kr
융합법학	김기창	1901	keechang@korea.ac.kr

## 3. 행정실 연락처

직위	성명	담당업무	구내번호	Email
직원	김혜윤	학적, 장학	1292	dj2224@korea.ac.kr
직원	김윤정	교무, 입시	1422	kyj2866@korea.ac.kr

※ 교내 전화 연결 방법 : ☎ 02-3290- 구내 전화번호

## II. 2020학년도 전기 학사일정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개강 일정이 연기(2020년 3월 16일(월) 개강)되었기 때문에 아래 학사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년월	일	요일	일정
2020.1	1	수	신정(공휴일)
	6~8	월~수	완제본 논문 접수
	24~26	금~일	설날(공휴일)
	31	금	2020학년도 전기 석·박사통합과정(진입)전형 및 2019학년도 후기 학·석사연계과정 전형합격자발표
2	3~25	월~화	1학기 휴/복학, 재입학,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3~11	월~화	전기 외국어시험(제2외국어 및 한국어) 접수(예정)
	19~21	수~금	1학기 수강신청
	21~27	금~목	2020학년도 1학기 등록
	25	화	2019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3	1	일	삼일절(공휴일)
	2	월	1학기 개강
	2~20	월~금	1학기 석·박사통합과정 조기수료 신청
	3~5	화~목	전기 종합시험 신청
	7	토	전기 외국어시험(제2외국어 및 한국어) 시행
	9~11	월~수	1학기 수강신청 정정 및 확인
	9~20	월~금	2020학년도 후기 외국인 입학원서 인터넷 접수
	9~27	월~금	2020학년도 후기 외국인 입학시험 제출서류 접수
	16~27	월~금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접수(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조건)
	20~27	금~금	전기 종합시험시행(학과별 시행)
4	1~8	수~수	2020학년도 후기 내국인 입학원서 접수
	1~10	수~금	2020학년도 후기 내국인 입학시험 제출서류 접수
	3	금	전기 외국어시험(제2외국어 및 한국어) 합격자 발표
	14	화	전기 종합시험 합격자 발표
	15	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3	월~목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30	목	부처님오신날(공휴일)

5	5	화	개교기념일, 어린이날(공휴일)
	9	토	2020학년도 후기 입학시험 시행
	25~27	월~수	2020학년도 후기 석·박사통합과정(진입)전형 원서접수
6	6	토	현충일(공휴일)
	11~12	목~금	2020학년도 후기 석·박사통합과정(진입)전형 입학시험 시행(학과별)
	12	금	2020학년도 후기 입학시험 합격자 발표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 입력 마감(인터넷)
22	월	여름방학 시작	
7	1~3	수~금	완제본 논문 접수
	30	목	2020학년도 후기 석·박사통합과정(진입)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8	3~25	월~화	2학기 휴/복학, 재입학,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3~11	월~화	후기 외국어시험(제2외국어 및 한국어) 접수
	15	토	광복절(공휴일)
	19~21	수~금	2학기 수강신청
	21~28	금~금	2학기 등록

※ 아래의 홈페이지들은 일주일에 최소 1~2회 방문하시어, 업로드 되는 공지들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반대학원 법학과 홈페이지(<http://kulawschool.korea.ac.kr> > 메인화면 '일반대학원 법학과' 배너클릭)
2. 일반대학원 홈페이지(<http://graduate.korea.ac.kr>)
3. 고려대학교 포털 (<http://portal.korea.ac.kr> > 일반공지사항 및 학사일정 참조)

## Ⅲ. 학사안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개강 일정이 연기(2020년 3월 16일(월) 개강)되었기 때문에 아래 학사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 수강신청

#### 가. 방 법

- 1) 인터넷 수강신청 전용 URL(<http://sugang.korea.ac.kr/graduate>)에 접속하여 수강신청
  - 2) 단, 지도교수 지정과목은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수강신청 가능함
- ※ 수강신청은 '포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며, 접속 시 필요한 학번은 **2020년 2월 3일(월) 10시부터** 위 수강신청 전용 URL 또는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수험번호로 확인 가능함(강의시간표 및 강의계획(안)도 위 URL에서 확인)

#### 나. 신 청

■ 2020년 2월 19일(수) 10:00 ~ 2월 21일(금) 17:00

#### 다. 정 정

■ 2020년 3월 9일(월) 10:00 ~ 3월 11일(수) 17:00

※ **개 강 : 2020년 3월 16일(월)**

※ 고려대학교 포탈시스템(KUPUID) 신청 및 사용 : 2020년 3월 2일(월)부터 가능

#### 라.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1) 수강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전산 입력하여야 함
- 2) 수강신청 후 [고려대학교 포탈시스템(KUPUID) > 학적/수업 > 수강신청내역조회]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정정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 내 정정하여야 함
- 3)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의 이수구분(전공, 연구지도, 지도교수지정과목) 및 학수번호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함
- 4) 수강신청 시 교과목 이수구분 선택 오류 및 학수번호 입력 오류 등으로 잘못 신청하여 수강한 과목에 대해서는 학점 인정이 불가함
- 5)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후 수강신청 및 정정 또는 과목포기신청은 할 수 없음
- 6) 대학원은 재수강 제도가 없으며, 중복수강 한 과목은 학점 인정이 불가함  
(단, 과락(F)의 경우 중복수강 가능)
- 7) 어떠한 경우라도 동일교과목 또는 유사교과목을 중복 수강하는 경우 학점 인정이 불가함

교시별 강의시간 (안암캠퍼스)			
1 교시	09:00 ~ 10:15(75분)	2 교시	10:30 ~ 11:45(75분)
3 교시	12:00 ~ 12:50(50분)	4 교시	13:00 ~ 13:50(50분)
5 교시	14:00 ~ 15:15(75분)	6 교시	15:30 ~ 16:45(75분)
7 교시	17:00 ~ 17:50(50분)	8 교시	18:00 ~ 18:50(50분)
9 교시	19:00 ~ 19:50(50분)	10 교시	20:00 ~ 20:50(50분)
11 교시	21:00 ~ 21:50(50분)	※ 휴식시간: 75분 수업은 15분 / 50분 수업은 10분	

## IV. 교과과정

### 1. 법학과 전공분야

- 법철학 전공 (法哲學 / Philosophy of Law)
- 헌법 전공 (憲法 / Constitutional Law)
- 행정법 전공 (行政法 / Administrative Law)
- 국제법 (國際法 / International Law)
- 형법 전공(刑法 / Criminal Law)
- 민법 (民法 / Civil Law)
- 상법 전공 (商法 / Commercial Law)
- 사회법 전공 (社會法 / Labor Law)
- 형사소송법 전공 (刑事訴訟法 / Criminal Procedure)
- 민사소송법 전공 (民事訴訟法 / Civil Procedure)
- 지적재산권법 전공(知的財産權法 / Intellectual Property Law)
- 융합법학 전공(融合法學 / Interdisciplinary Jurisprudence)

### 2. 과정별 수료학점

과정	수업연한(단위: 년)	수료이수학점	
		교과학점	연구지도학점
석사	2	24(자기전공:12이상)	8
박사	2	36(자기전공:18이상)	8
석·박사 통합	4	54(자기전공:27이상)	16

※ 전공 교과학점은 매학기 12학점 까지 취득 가능함 (지도교수 지정과목 포함 15학점까지 취득 가능)

#### 가. 석사과정

- 1) 학위취득을 위한 교과학점 24학점 중 12학점 이상을 자기 전공과목 중에서 이수하여야 함
- 2) 연구지도학점(DKK500)은 교과학점 외에 매학기 2학점씩 4학기 간, 총 8학점을 취득하여야 함
- 3) 학위취득을 위한 교과학점 중 자기전공학점 외의 잔여학점(12학점)은 자기 전공과목으로 이수하여도 되고 법학과 내 타 전공과목으로 이수하여도 됨.

## 나. 박사과정

- 1) 학위취득을 위한 교과학점 36학점 중 18학점 이상을 자기 전공과목 중에서 이수하여야 함
- 2) 연구지도학점(DKK500)은 교과학점 외에 매학기 2학점씩 4학기 간, 총 8학점을 취득하여야함
- 3) 학위취득을 위한 교과학점 중 자기전공학점 외의 잔여학점(18학점)은 자기 전공과목으로 이수하여도 되고 법학과 내 타 전공과목으로 이수하여도 됨.

## 다. 석·박사 통합과정

- 1) 석사학위 없이 박사학위만을 취득하는 과정으로서, 학위 취득에 필요한 교과학점 54학점 중 27학점 이상을 자기 전공과목 중에서 이수하여야 함
- 2) 연구지도학점(DKK500)은 교과학점 외에 매학기 2학점씩 8학기 간, 총 16학점을 취득하여야함
- 3) 학위취득을 위한 교과학점 중 자기전공학점 외의 잔여학점(27학점)은 자기 전공과목으로 이수하여도 되고 법학과 내 타 전공과목으로 이수하여도 됨.
- 4) 석사과정 중 석·박사 통합과정에 진입하고자 하는 자는 2학기 또는 3학기 말에 진입 신청 가능 (매 학기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석사과정 시 이수한 과목을 박사과정에서 중복 이수할 수 없음

※ 기초공통과목(LAW1001~1036)중 각 전공별 일반이론 교과목(LAW1001~1010) 1과목에 한 하여 자기전공 취득학점으로 포함 할 수 있음. 단, 본인 전공 일반이론 과목일 경우만 가능하며(예: '헌법'전공자가 '헌법일반이론'을 수강할 경우, 헌법 자기전공 취득학점으로 인정 됨), 지적재산권법의 경우 일반이론 교과목이 기초공통 과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적재산권법 개설 과목(LAW6069 지적재산권일반이론)에 포함되어 있음.

※ 법학과 내 개설과목이 아닌 타 학과 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 법학과 내규 제2조(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참고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수강 신청 이전에 반드시 행정실로 제출해야 함

## 【 각 세부전공별 학수번호 】

- ▶ LAW1001~1036 : 기초공통과목
- ▶ LAW1501~1531 : 법철학 전공
- ▶ LAW2001~2043 : 헌법전공
- ▶ LAW2501~2560 : 행정법전공
- ▶ LAW3001~3080 : 국제법전공
- ▶ LAW3501~3510 : 융합법학전공
- ▶ LAW4001~4047 : 형법전공
- ▶ LAW5001~5075 : 민법전공
- ▶ LAW6001~6158 : 상법(해당 학수번호 범위 내에 지적재산권법 전공과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법 및 지적재산권법 전공자들은 대학원요람 법학과 전공별 개설과목 리스트의 학수번호를 반드시 참조)
- ▶ LAW7001~7031 : 사회법전공
- ▶ LAW8001~8028 : 형사소송법전공
- ▶ LAW9001~9060 : 민사소송법전공

### 3. 지도교수 지정과목

- ① 지도교수는 신입생에 대하여 학부 또는 대학원(박사과정 학생의 경우)의 법학 과목 중에서 지도교수 지정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도교수 지정과목이 정해지면 그 내용을 지도교수, 학과 주임교수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신입생 첫 학기 필수 서류 제출 기간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과목을 수료 전 까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지정과목을 지정받지 않은 학생은 지정과목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연구지도학점

수료에 필요한 필수학점으로 매 학기 2학점씩 취득해야 함  
(‘연구지도학점’은 과정별 학위취득 ‘교과학점’과는 별도로 취득해야함)

- 1) 연구지도(DKK500) : 재학생 석/박사 1~4학기, 통합과정 1~8학기, 매 학기 2학점씩
- 2) 연구지도(DKK600) : 수료연구생(석/박/통합과정 수료등록자)

※ 수료연구생 : 해당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수료 후 매학기 소정의 “등록” 및 “수료연구지도”를 수강하고 있는 자

### 5. 종합시험 (학위논문 제출자격 시험)

과정	응시자격		시행내용(필기시험)	시행시기
	학점이수	평점평균		
석사	12학점 이상	3.0 이상	각 전공별 종합시험 대상 교과목 중 <b>3과목</b> 선택	전기 : 3~4월초 후기 : 9~10월초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박사	21학점 이상	3.0 이상	각 전공별 종합시험 대상 교과목 중 <b>4과목</b> 선택	
석·박사통합	30학점 이상	3.0 이상	각 전공별 종합시험 대상 교과목 중 <b>4과목</b> 선택	
공통	시험시간		각 과목당 <b>60분</b>	
	배점 / 합격점		100점 / <b>70점 이상</b>	
	합격과목 수		석사 <b>3과목</b> / 박사, 석·박사통합 <b>4과목</b>	

※매학기 대학원 법학과 홈페이지 별도공지

- ※ 각 전공별 종합시험 대상 교과목 등의 세부내용은 [법학과 내규] 참조
- ※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 종합시험을 구술시험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구술시험에 사용된 논문을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위한 자격용 논문(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 논문 제출자격 중 하나로 SCI급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비자연계)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한 자)으로 중복 사용하여서는 안 됨. 세부내용은 [법학과 내규] 참조

### 6. 외국어시험 (학위논문 제출자격 시험)

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은 각 학위과정의 제1차 학기부터 응시할 수 있으며, 면제받고자 할 경우 공시된 절차에 의해 학위논문 제출 전까지 면제받아야 함.

과정	제1외국어	제2외국어	시행시기	
석사	영, 독, 불, 중, 노, 일, 서, 한문 중 택 1	없음		
박사	영어	독, 불, 중, 노, 일, 서, 한문 중 택 1 (16개 학과만 시행)		
석·박사통합	영어	독, 불, 중, 노, 일, 서, 한문 중 택 1 (16개 학과만 시행)		
외국인 전체	- 전 과정 모두 한국어를 응시 - 16개학과의 박사과정은 제1외국어로 한국어, 제2외국어로 영어를 응시 (단, 자국어는 응시할 수 없음)			
통과 방식	영어	필답고사	국제어학원	국제어학원 공지참조
		대체강좌 수강		
	제2외국어	공인성적표 대체	대학원	대학원 공지 참조
		대학원 대체강좌 (공통영어/GRA500)		
		필답고사	대학원	매학기 1회
		대체강좌 수강	국제어학원	국제어학원 공지 참조
대학원 대체강좌_한국어 (공통한국어/GRA600)	대학원	대학원 공지 참조		
공인성적표 대체	대학원	면제기준표 참조		

※매학기 대학원 또는 국제어학원 홈페이지 별도 공지

\* 제2외국어 응시학과 : 법, 국어국문, 영어영문, 중일어문, 노어노문, 불어불문, 독어독문, 서어서문, 사, 사회, 언어, 철, 한국사, 비교문학비교문화협동과정, 영상문화학협동과정, 문화유산학협동과정(구 문화재학협동과정)

※ 외국어시험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4장 제1절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또는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 학사 및 학과안내 > 학사안내 >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 참조

## 7. 논문심사

과정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시행시기
	제출연한	학점이수	평점평균	자격시험	논문	
석사	6	교과: 24 연구지도: 8	3.0 이상	종합시험 외국어시험	-	전기 : 4월 후기 : 10월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매학기 대학원 홈페이지 별도공지
박사	10	교과: 36 연구지도: 8		종합시험 외국어시험	※ 아래 3)번 참조	
석·박사 통합	12	교과: 54 연구지도: 16		(제2외국어 포함)		
공통	학위청구논문 신청 시 반드시 <b>재학 또는 수료연구(재학) 상태</b> 이어야 함 ※ 휴학생은 반드시 복학 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수료연구생 : 해당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매학기 소정의 등록 및 수료연구지도를 수강하는 있는 자 ※ 2017학년도 일반대학원 신입생부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 온라인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하며, 미이수 시 학위 청구논문 제출 자격이 충족되지 않음.(근거 :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 30조(인권과 성평등 교육 및 연구윤리교육))					

- 1) 지도교수 지정과목 이수자일 경우, 해당과목 취득 또는 심사 신청 학기에 해당 과목 취득예정자이어야 함.
- 2) 제출연한은 본인의 입학년도로부터 산입해야 함.
- 3)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 논문제출자격 중 하나로 SCI급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비자연계)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한 자여야 함.
- 4) 연구 윤리교육(재학, 휴학, 수료생 모두 수강 가능하나, 가급적 입학 후 첫 학기에 이수 권고)
  - ▶ 교육성격 : 논문작성 시 권장교육
  - ▶ 수강방법 : 입학 후 항시 온라인컨텐츠로 수강 가능하며 수강신청 시 '연구윤리교육이수안내' 참고

※ 학위청구논문 제출 관련 세부내용(제출자격, 시기, 서류 등)은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4장 제2절 '학위청구논문 심사'] 또는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 학사 및 학과안내 > 학사안내 > 학위청구논문 및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 참조

## V. 법학과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칙 또는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서 위임하였거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

- ① 학생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교과학점 중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전공과목 중에서 취득하여야 한다. 연구지도 학점은 교과학점 외에 매 학기 2학점씩 취득하여야 한다.
- ② 지도교수의 지시에 의하여 법학과 내 타 전공의 교과목을 취득한 경우에는 3학점 이내의 범위에서 학위 취득에 필요한 자기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이전에 자기 전공학점 인정을 위한 신청서를 지도교수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학과 외의 타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자기 전공 학점을 제외한 잔여 학점에서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한다. 다만 해당 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이전에 학점인정을 위한 소정의 신청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예비교수자과정(CTL810)'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3조 (지도교수 신청)

- ① 신입생은 제1차 등록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 전까지 지도교수와 면담한 후, 지도교수, 학과주임의 확인을 받아 지도교수 신청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 ①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SCI급, SSCI급 또는 학교 규정에 따라 이에 준하여 취급할 수 있는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 ② 외국인 지원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으로 TOPIK(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의 취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 (지도교수 지정과목)

- ① 지도교수는 신입생에 대하여 학부 또는 대학원(박사과정 학생의 경우)의 법학 과목 중에서 지도교수 지정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도교수 지정과목이 정해지면 그 내용을 지도교수, 학과 주임교수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수강신청 정정기간 전까지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과목을 지정받지 않은 학생은 지정과목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시험)**

- ① 학생은 [별표 1]의 종합시험 대상 교과목 중 자신의 전공과목에서 석사과정은 3과목, 박사과정은 4과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필기시험 대상 교과목의 수는 각 전공별 10개 과목 이내로 한다.
- ③ 제1항의 필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종합시험 합격에 필요한 과목 수 이내로 응시과목을 신청서에 기재한 후 지도교수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종합시험의 시간은 각 과목당 60분으로 한다. 사전에 신청한 외국인 응시자에 대하여는 종합시험의 출제와 답안 작성을 영어로 할 것을 허용할 수 있다.
- ⑤ 종합시험은 각 전공별로 문제은행을 구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문제의 수는 종합시험 대상 교과목당 15문제 내외로 한다.
- ⑥ 종합시험의 배점은 각 과목당 100점으로 하며, 합격점은 70점 이상이다. 이미 종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시험을 면제하고 합격한 것으로 처리한다.
-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종합시험을 구술시험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SCI급, SSCI급 또는 학교 규정에 따라 이에 준하여 취급할 수 있는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1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게재한 학생
  2.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Korea University Law Review」 또는 「The Asian Business Lawyer」에 학술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한 학생
  3. 제1호와 제2호의 학술지가 아닌 기타 학술지에 학술논문을 2편 이상 게재한 학생
- ⑧ 종합시험을 구술시험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종합시험 신청기간에 구술시험을 신청하고, 구술시험은 제7항의 논문에 관련된 내용으로 하되, 구술시험 신청 전에 해당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어야 한다.
- ⑨ 제7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 논문은 제4조 제1항에서 요구되는 논문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교과운영)**

- ① 기초공통과목 중 각 전공별 일반이론 교과목은 자기전공 취득학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② 기초공통과목 중 두 개 전공 이상에 관련되거나 전공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교과목을 강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과주임 교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융합법학전공의 개설과목은 융합법학전공 학생만 수강할 수 있다.

**부 칙**

이 내규는 2020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전공	교 과 목		비고
법학 원리	① 법학방법론(LAW1501), ② 자연법론(LAW1503), ③ 법사회학(LAW1502), ④ 법이념론(LAW1505), ⑤ 근현대법철학(LAW1508), ⑥ 법과시민사회론(LAW1527), ⑦ 법과정치(LAW1530), ⑧ 논증이론(LAW1517), ⑨ 법효력론(LAW1506)		
헌법	① 헌법해석론(LAW2018), ② 민주주의론(LAW2029), ③ 법치주의론(LAW2016), ④ 사회국가론(LAW2031), ⑤ 기본인권론 I (LAW2008), ⑥ 기본인권론 II(LAW2011), ⑦ 정부형태론(LAW2005), ⑧ 입법권론(LAW2004), ⑨ 사법권론(LAW2007), ⑩ 헌법재판제도론(LAW2013)		
행정 법	행정법 계통	① 행정법일반이론(LAW1003), ② 행정작용법론(LAW2502), ③ 행정절차법(LAW2515), ④ 행정입법론(LAW2501), ⑤ 국가책임론(LAW2514), ⑥ 행정집행법(LAW2506), ⑦ 행정쟁송법(LAW2516)	
	세법계통	① 세법일반이론(LAW2531), ② 소득세법(LAW2535), ③ 법인세법(LAW2534), ④ 소비세법(LAW2536), ⑤ 상속세및증여세법(LAW2537), ⑥ 국제조세법(LAW2538)	
국제 법	① 국제법일반이론(LAW1004), ② 조약법(LAW3002), ③ 외교관계법(LAW3018), ④ 해양법(LAW3003), ⑤ 국가책임론(LAW3004), ⑥ 무력충돌법(LAW3016), ⑦ 국제상품무역법(LAW3046), ⑧ 국제서비스무역법(LAW3049), ⑨ WTO 분쟁해결제도(LAW3040)		①은 필수
형법	① 형법일반이론(LAW105), ② 정범 및 공범론(LAW4006), ③ 형벌론(LAW4007), ④ 보안처분법(LAW4016), ⑤ 행형학(LAW4018), ⑥ 형사정책특수연구(LAW4019), ⑦ 경제형법연구(LAW4026), ⑧ 재산범론(LAW4029), ⑨ 죄형법정주의론(LAW4045)		
민법	① 법률행위일반론(LAW5007), ② 시효제도론(LAW5004), ③ 물권변동론(LAW5009), ④ 질권·저당권론(LAW5014), ⑤ 매매계약론(LAW5019), ⑥ 대차계약론(LAW5022), ⑦ 손해배상론(LAW5020), ⑧ 혼인법일반이론(LAW5061), ⑨ 친자법일반이론(LAW5065), ⑩ 상속법일반이론(LAW5040)		
상법	① 상행위법(LAW6001), ② 회사법(LAW6002), ③ 유가증권법(LAW6003), ④ 보험법(LAW6004), ⑤ 해상법(LAW6005), ⑥ 국제거래법(LAW6017), ⑦ 공정거래법(LAW6051), ⑧ 금융법특수문제연구(LAW6106)		
사 회 법	① 노동계약법론(LAW7001), ② 근로시간 및 휴식보호법(LAW7002), ③ 해고보호법론(LAW7003), ④ 사회보장법론(LAW7005), ⑤ 노동조합법론(LAW7006), ⑥ 단체협약법론(LAW7007), ⑦ 정의행위법론(LAW7008)		
형사 소송법	① 형사소송법 일반이론(LAW1009), ② 수사절차론(LAW8005), ③ 증거법론(LAW8006), ④ 상소제도론(LAW8010), ⑤ 소송구조론(LAW8015), ⑥ 강제처분론(LAW8018), ⑦ 기판력이론(LAW8026)		
민사 소송법	① 민사소송법일반이론(LAW1010), ② 소송물론(LAW9002), ③ 소송절차의기본원칙(LAW9005), ④ 증거법일반이론(LAW9006), ⑤ 다수당사자소송론(LAW9011), ⑥ 복수청구소송론(LAW9012), ⑦ 민사집행법일반이론(LAW9014), ⑧ 파산법(LAW9030)		
지적재 산권법	① 지적재산권일반이론(LAW6069), ② 상품화권(LAW6072), ③ 저작권판례연구(LAW6073), ④ 특허판례연구(LAW6074), ⑤ 상표판례연구(LAW6075), ⑥ 부정경쟁방지법판례연구(LAW6076), ⑦ 지적재산권과 법의 충돌(LAW6080)		

<b>융합 법학</b>	<p>■ 석사과정 신청 가능과목 : ① 한국법기초연구(LAW3501), ② 한국법심화연구(LAW3502), ③ 주제탐구세미나1(LAW3507)</p> <p>■ 박사과정 신청 가능과목 : ① 한국법기초연구(LAW3501), ② 한국법심화연구(LAW3502), ③ 주제탐구세미나2(LAW3508), ④ 법학연구방법론2(LAW3504)</p> <p>■ 석박통합과정 신청 가능과목 : ① 한국법기초연구(LAW3501), ② 한국법심화연구(LAW3502), ③ 주제탐구세미나1(LAW3507), ③ 주제탐구세미나2(LAW3508), ④ 법학연구방법론2(LAW3504)</p>
------------------	--

### 법학과 개설과목 및 교수요목

고려대학교 대학원 요람 참조

▶ [ 고려대학교 포탈시스템(KUPID) > 지식관리 > “대학원 요람” 검색]

## VI. 신입생 필수 제출서류 안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개강 일정이 연기(2020년 3월 16일(월) 개강)되었기 때문에 아래 제출기간 등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 서류 제출 기간 및 장소

- 2020년 3월 2일(월) ~ 3월 6일(금)까지  
대학원 법학과 행정실(법학관신관 110A호)로 제출

### 2. 제출 서류 종류

#### 가. 지도교수 신청

별도 제출서류는 없으나, 반드시 포탈의 [학적/졸업>학적사항>지도교수 신청]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함

- ※ 본인이 희망하는 지도교수님과 사전면담 후 신청해야 함
- ※ 학·연·산협동과정은 지도교수신청서를 소속대학 학과 행정실로 제출해야 함

#### 나. 지도교수 지정과목 신청서

2020년 3월 2일(월) ~ 3월 6일(금)까지 포탈(KUPID)에 신청 후 출력

- 지도교수 지정과목이란 정규 교과목외에 학위에 필요한 교과목을 추가로 취득해야 하는 필수학점으로, 전공취득 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 개강 전에 지도교수와 지정과목을 상담한 후 상기 기간까지 포탈 [수업>수업활동>대학원 지정과목입력]에서 지정과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출력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소속대학 학과 행정실로 제출
- 지정과목 면제 시에도 면제로 입력한 후 출력하여 제출해야 하며, 최종저장 또는 출력 버튼을 누른 후에는 정정이 불가능함
- ※ 지도교수 상담 시에는 출신대학(원) 성적증명서를 지참해야 함

#### 다. 졸업증명서, 석사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입학지원서 제출 시 재학 또는 수료 상태로 <졸업증명서> 또는 <석사학위증명서> 와 전적 학력의 전 학년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반드시 상기 기간 내에 '졸업일자가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국내대학 출신자 : '상기 서류 일체'를 소속대학 학과 행정실로 제출
- 외국대학 출신자(외국인학생 포함)
  - 영문 성적증명서 : 원본은 소속대학 학과 행정실로 제출
  - 학위(졸업) 증명서  
: 학위(졸업) 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중국대학 출신은 중국교육부 학위인증서)는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단, 졸업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대학은 졸업일자가 명시된 성적증명서를 제출
- ※ 원서 접수 시 학위(졸업) 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를 제출한 학생은 제외

**라. 본인 통장사본**

본인 계좌를 등록해야만 추후 장학금 지급 및 등록금 환불이 가능함

**마.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국내거소증 사본),  
입국신고서 및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 **외국 국적자만 제출**